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3. 12(목) 10:00

제2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「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동친화도시 추진
지방정부협의회」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「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」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65호
- 나. 제 출 자 : 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2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3. 2.

2. 제안이유

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·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「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」 개정 규약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8조 및 제15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
- 나.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(제1조)
- 다.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(제4조)
- 라.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(제12조)
- 마.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·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(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동의안 제출 배경

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시 (2019. 9) 개정된 규약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개정 내용

- 규약 명칭이 변경되었으며
(변경 전 :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
변경 후 :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)
- 규약 제1조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으로 「지방자치법 제152조」를 삽입하였으며
- 제12조에서는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
- 제13조제4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근거를 마련함.

다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계법령

지방자치법 제 152조 ~ 제 158조

제152조(행정협회의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“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8조(협의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